

입출금등 거래 이용약관

제정 2021. 01. 18.

개정 2021. 08. 05.

개정 2021. 11. 26.

개정 2022. 09. 01.

개정 2024. 05. 31.

개정 2024. 08. 16.

개정 2025. 08. 29.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이 토스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입출금등**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계좌”란 고객 본인의 명의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2. “등록계좌”란 고객 본인의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서 고객이 회사에 그 정보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3. “이체출금거래”란 고객계좌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하며, “이체입금거래”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고객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4. “대체출금거래”란 고객계좌로부터 회사에 개설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하며, “대체입금거래”란 회사에 개설된 다른 계좌로부터 고객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5. “유가증권대체거래”란 고객계좌로부터 당사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주식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6. “입출금거래”란 이체출금거래, 이체입금거래, 대체출금거래, 대체입금거래를 통칭하며, “입출금등 거래”란 입출금거래와 유가증권대체거래를 통칭합니다.
7. “자동화기기출금거래”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객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거래를 말하며, “자동화기기입금거래”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객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8. “자동이체출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출금거래”란 고객의 신청에 따라 특정일에 주기적 또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체출금거래 또는 대체출금거래를 말하며,

“자동이체입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입금거래”란 고객의 신청에 따라 특정일에 주기적 또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각 이체입금거래 또는 대체입금거래를 말합니다.

9. “토스앱”이란 제휴 플랫폼 회사에 의하여 제작 및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0. “연계기관”이란 회사가 입출금거래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제휴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을 말합니다.
 11. “ARS 인증”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유선으로 고객계좌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지정인증서”란 고객의 전자서명에 관하여 회사와 업무제휴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발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13. “지정 OTP”란 고객의 본인확인 또는 거래지시(출금동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같습니다)를 위한 접근매체의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회사가 업무제휴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고객에 대하여 발급한 해킹방지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 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4. “WTS”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증권매매거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웹트레이딩시스템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의 기본조건)

- ① 고객은 고객계좌를 보유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입출금등**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고객계좌의 재산을 전부 인출하고 고객계좌를 전부 폐쇄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출금거래의 한도)

- ① 이체출금거래 및 대체출금거래, **유가증권대체거래의 1 회 또는 1 일 한도**(“출금 및 출고 거래한도”)는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별첨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 및 별첨 1 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출금거래의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1 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 5 조 (이용의 제한)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입출금등** 거래의 종류는 회사 및 연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객의 **입출금등** 거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된 경우
 2. 고객계좌에 사고가 접수되거나 법적으로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계좌의 특성상 **입출금등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거래가능액에 제한이 있는 경우
 4. 회사의 개별 상품 특성상 **입출금등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5. 증권카드 또는 연계기관 현금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등록된 경우
 6. 출금거래 할 계좌의 금액이 출금금액보다 부족한 사유 등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7. 통신기기, 회선 등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8. 본인확인에 실패하거나 거래지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9. 기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조 (업무위탁)

회사는 고객의 편의 및 거래안전을 위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일부를 연계기관이나 "토스앱"을 운영하는 제휴 플랫폼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 시 본인확인)

고객은 **입출금등** 거래를 이용할 때 지정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인증, 지정 OTP 입력, ARS 인증 등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을 통한 고객 본인여부의 확인 및 거래지시의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 ① **입출금등** 거래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입출금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 **별첨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 및 별첨 2**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1 조(약관의 변경)**를 준용합니다.

제 9 조 (자동입출금거래의 처리)

- ① 고객이 자동이체출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출금거래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날(영업일이 아닌 날의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자동출금지정일”이라고 합니다)에 별도의 지시나 통지 없이 거래를 처리합니다.
- ② 자동출금지정일 현재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고객이 지정한 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회사는 자동이체출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출금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자동이체입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입금거래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날(영업일이 아닌 날의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자동입금지정일”이라고 합니다)에 별도의 지시나 통지 없이 거래를 처리합니다.
- ④ 자동입금지정일 현재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고객이 지정한 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회사는 자동이체입금거래 또는 자동대체입금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중요사항의 고지)

- ① 고객은 고객계좌에 관한 중요사항(통장의 분실, 증권카드의 분실, 인감 분실, 압류, 질권설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 고객센터(TEL : 1599-7987)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휴대전화 번호의 변경 또는 실지명의를 변경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고객계좌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당해 변경을 고지하거나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고객센터 이용(TEL : 1599-7987)
 2. 토스앱 또는 WTS 를 통한 회사서비스 화면에서 내 정보 메뉴 이용

제 11 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 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토스앱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토스앱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때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거나 통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스앱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본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합니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 (관계법규의 준용)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3 조 (분쟁조정)

① 고객은 입출금등 거래의 이용과 관련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첨 1>

제 4 조 별첨에서 정하는 출금 및 출고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스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증권업무안내> 입출금한도 참조.

<별첨 2>

제 8 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스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증권업무안내> 업무수수료 참조.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